

원산지증명서 수수료 결정내역

(개정)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45조 제2항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70호)의 규정에 따라 2020년 비특혜 및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수수료 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1.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결정 방법

〈근거규정〉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(제45조)

- 발급수수료 단가 = $\frac{\text{지지난해 (재료비 + 인건비 + 사업비 + 경비)}}{\text{지지난해 증명서 발급건수}}$
- 수수료 결정액 = 산정된 발급수수료 단가에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
-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, 변동률은 전년도 수수료를 기준으로 최대 30%를 넘지 않아야 함.

2. 2020년 원산지증명서 수수료 결정액 및 변경후 수수료

- 수수료 결정액
 - 비특혜원산지증명서 12,712원,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14,156원
- 변경후 수수료 (전년도 수수료의 30% 이내로 제한하는 변동률 규정을 적용한 금액)
 - 비특혜원산지증명서 9,000원(변동률 28.6%),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1,900원 (변동률 26.7%)

〈표〉 원산지증명서 수수료 결정액 세부내역 (단위 : 건, 원)

구 분	비특혜원산지증명서	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
A, 2018년 발급건수	574,181	28,627
B. 2018년 비용합계 <(1)+(2)+(3)+(4)>	6,635,197	368,400
(1) 2018년 재료비	0	0
(2) 2018년 인건비	2,667,049	148,080
(3) 2018년 사업비	652,020	36,202
(4) 2018년 경비 ¹⁾	3,316,197	184,118
C, 발급수수료 단가 < B / A >	11,556	12,869
D. 수수료 결정액 < C x 부가가치세 >	12,712	14,156
변경후 수수료 (변동률)	9,000 (+ 28.6%)	1,900 (+ 26.7%)

1) 간접비용항목으로 전국상공회의소의 일반 및 수익사업특별회계 사업경비와 일반관리비를 집계한 후, 전체 상의직원수 대비 증명서 발급담당직원수 비율(12.81%)을 기준으로 비용 배분